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산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체계 마련 〉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08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4
나. 제정안의 체계	8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	10
나. 재활용 기본계획	15
다. 분리배출 의무 및 지원	18
라. 농산부산물처리업	19
마. 농산부산물자원화시설	25
바. 보칙 및 벌칙	2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17.
3.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벳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화하여 연료로 활용하기도 하므로 다른 폐기물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부산물에 대하

여도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5조).

다.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농산부산물 처리업(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

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농산부산물에 대하여 사전적·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농산부산물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산물 이외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볏짚·파프리카 줄기와 같은 작물잔사, 찌라기·커피박 등 곡물·식품 가공과정의 잔여물도 포함될 수 있음.

현재 농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¹⁾로 분류되어 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매립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 ②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으며, ③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유용성(有價性)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음. 현재 농산부산물 중에서는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음.²⁾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³⁾에 따르면 국내 농산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72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불법소각되거나 방치되고 있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6호)

3) 「농업 바이오매스 활성화 방안 연구」(농림축산식품부, 2019. 12)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관리체계가 농산부산물
품종별·계절적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한 농산부산물 수거·처리의 불편함과 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농산부산물이 노천에서 불법 소각되어 산불⁴⁾ 및 미세
먼지가 농촌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음.⁵⁾

또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에너지화하여 연료로 사용
될 수 있는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⁶⁾

2021년 「수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굴 패각
등이 재활용 대상으로 인정되어 해양투기가 줄어들고,⁷⁾ 어업인의 폐기
물부담금 부담도 경감⁸⁾된 사례와 같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농산부
산물에 대한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산부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관리를 통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최근 10년 평균(2016~2025) 산불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2.3%를 차지(산불통계연보, 산림청)
5)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4년 1월부터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철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부산물 파쇄와 불법소각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6) 불법소각되는 농산부산물을 고품질연료(펠릿)로 재활용하는 경우 연간 약 490만 톤의 온실가스 4.6만
톤 이상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고, 이를 배출권 거래가격 등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94억원의
경제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등 농산부산물 재활용의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폐기물처리 비용을 고려한 국내 영농부산물 자원화 방안의 경제성과 환경성 분석」
(김유안, 박주영, 서교, 2023. 7.)
7) 현재 관련 통계조사 실시중(해양수산부)
8)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음.

현재 해양폐기물과 수산부산물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체계 하에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농산부산물 역시 이에 따라 처분 또는 재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다면, 폐기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현행 관리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소관 부처의 이원화에 따라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산부산물에 관한 처리체계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등 관련 단체도 관리체계의 부실화 및 소관부처 이원화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정부 부처 및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의견]

농림축산식품부	▫ (신중검토) 농산부산물의 폐기·환경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체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별도 법률로 처리규제 체계를 신설할 경우 관리중복 및 기관간 역할 혼선 등 우려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중검토)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은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지정 제도를 활용할 필요
한국폐기물재활용	▫ (신중검토) 농산부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 체계 하에서

공제조합		적정 재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현행 관리체계의 부실화 및 소관부처 이원화로 농산부산물물의 적정 관리에 혼선 초래 우려
제21대 국회 제출의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신중검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농산부산물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향후 축산부산물, 산림부산물 등 개별법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어 폐기물 관리 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
	한국 폐기물 협회	▫ (신중검토) 폐기물 종류별로 관리주체를 별도 규정하여 관리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체계에 혼선 발생, ▫ 현행법 체계하에서 재활용 및 분리배출 등 규정 가능,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할 경우 기존 재활용업체는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이 이원화되는 문제 발생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하면, 농산부산물의 처리 방식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현행과 같이 폐기물 관리체계에 포섭하여 규율하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입법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제2114536호)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또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⁹⁾

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지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 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나.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장 없이 21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총칙적인 사항을, 안 제5조·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 부과와 이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도입함에 따른 처리업의 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허가의 취소, 과징금, 휴업과 폐업신고 등을 규정하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활용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구 분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총칙적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활용 기본계획	제5조(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지원	제7조(농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제8조(농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
농산부산물 처리업	제9조(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1조(농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제14조(농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제16조(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보칙·벌칙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 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중 농작물재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부산물”이란 농산물의 재배·수확·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줄기, 가지, 껍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부산물 재활용”이란 농산부산물을 식품, 비료, 사료, 연료 등 완성품의 원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농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농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 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6. “농산부산물 처리업”이란 농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농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7.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농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 정 안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농산부산물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농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동 법에 의하여 농업부산물 중 일부 품목은 재활용 대상으로 관리¹⁰⁾되고 있다는 점에서,

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과채류,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등 농산부산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고 있음.

제정안이 입법화되지 않더라도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정의 실익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비록 법 체계상 입법공백은 없더라도 현행 폐기물관리 체계에서는 농산부산물물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처분 및 재활용 등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면, 별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다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안 제1조는 “처리”와 “재활용”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처리”의 개념에 “재활용”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 체계 간에서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 <u>처리</u> ”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u>재활용</u> , 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둘째, 안 제2조제2호는 “농산부산물”을 농산물의 재배·수확·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농산물로부터 유래한 벚짚, 줄기 등 외에도, 가공 및 판매 등의 과정에서 농산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포장재 및 첨가물 등도 농산부산물에 포함될 수 있음.

제정안의 취지가 이러한 범위까지 농산부산물에 포함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농산부산물의 정의는 다른 법률과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핵심사항이므로, 법률에서는 그 규율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행령에서는 수산부산물의 범위를 “패류 껍데기”로 한정하고 있음.¹¹⁾

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이하 생략)

셋째, 안 제3조제1항은 농산부산물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대해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농산부산물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 그 밖에 폐기물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관할하도록 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각 부처가 수립한 규제 등의 범위, 체계 및 내용을 상이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부분의 농산부산물은 흙, 노끈, 농약 등과 섞이기 쉽다는 점에서, 부처별로 수립한 폐기물 관리체계에 따른 소관 대상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이에 따라 농업현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중첩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농산부산물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데, 법률 간의 적용 우선순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범위)에 대한 개정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수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재활용 기본계획

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과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규정함.

제 정 안

제5조(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1. 연간 농산부산물 발생량
 2. 연간 농산부산물 처리실적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제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먼저, 안 제5조는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주기의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에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관리하려는 입법취지와 배치될 수 있음.

또한, 계획 간에 내용상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문의 보완¹²⁾이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산부산물 재활용 계획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으로 보임.

다만, 현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¹³⁾에 따라 순환경제 통계조사, 「폐기물관리법」 제38조¹⁴⁾에 따라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 등¹⁵⁾이 실시되고 있는데, 각 법률에 따라 중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2)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의하여 순환경제기본계획에 농산부산물 관련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함.

1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4)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그 밖에도 “영농폐기물통계조사”, “전국폐기물통계조사” 등이 있음.

다. 분리배출 의무 및 지원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는 농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와 지원을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농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농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농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농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 및 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농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경우 안 제9조의 농산부산물중간처리업자가 농산부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기 용이해져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농산부산물물은 품목, 계절, 지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물의 종류와 발생량의 편차가 크다는 특성이 있으므로,¹⁶⁾ 폐기물관리체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농산부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분리배출체계를 마련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¹⁷⁾

한편, 제정안은 농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 제21조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리배출 관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라. 농산부산물처리업

제정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와 준수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등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 예를 들면, 과수부산물물은 1~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맥류와 서류 등은 4~6월, 미곡부산물물은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 「농업부분 바이오매스 자원 환산계수 및 잠재발생량 산정」(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1)

17)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의견

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농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농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11조(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농산부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농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농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 정 안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농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농산부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농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농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농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

제 정 안

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농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농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농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9조는 농산부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산부산물의 수집·운반과 중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재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농산부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농산부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해 별도 기준의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¹⁸⁾.

이와 관련하여, 한국폐기물공제조합은 법률안 제정시 농산부산물의 적정 관리에 혼선이 우려되고, 실질적인 재활용 방법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득이나 시설·장비의 별도 구비가 필요하여 사업영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또한, 제21대국회에 발의된 의안(「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제정안이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방치폐기물의 처리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등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8)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농산부산물자원화시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6조(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농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농산부산물의 자원화 3. 농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농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5. 농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 비료, 사료,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4는 시·군·구청장에게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⁹⁾.

그러나, 재활용 관련 시설은 주로 대형폐기물과 포장재, 폐지, 고철 등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활용자원의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에 설치 목적²⁰⁾을 두고 있어 농산부산물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정안은 농산부산물자원화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부산물

19)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물의 특성을 감안한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에 따른 종합적인 재활용 관련 시설에서 농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별도의 시설로서 각각 운영하도록 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입법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보칙 및 벌칙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농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정 안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먼저, 안 제19조는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위탁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구성요건과 형량 수준이 대체로 유사함.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와 ②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사한 법체계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문 의 처

02)6788-5417